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614 발의연월일: 2024. 8. 7.

발 의 자:김상욱·김선교·박준태

박덕흠 • 김장겸 • 서범수

성일종 • 조지연 • 강명구

박수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급증하면서 이에 따른 화재 발생도 증가하고 있는데, 주로 충전시설로부터 전기를 충전 중이거나 주차중에 발생하고 있음. 특히 전기자동차의 특성상 화재가 발생하면 열폭주 등으로 진압이 매우 어려운 실정임. 또한 현실적으로 국토가 좁아 공공건물 및 공동주택 등의 주차구역이 대부분 지하에 있기 때문에 전기자동차 등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방인력과 소방자동차 등의 진입이 어려워 대형 참사로 이어질 우려가 큼.

그럼에도 현행법은 전기자동차 등의 충전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설 치 등 안전관리 대책을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설의 소유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화재알림설비, 소화설비 등의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화재 예방뿐만 아니라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하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3항 신설, 제11조의4제1항·제2항 및 제11조의5제1항 등).

법률 제 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3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중 "제7항 및 제8항"을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12항) 중 "제11항"을 "제12항"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알림설비 및 소화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의4제1항 중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을"을 "제1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로,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충전시설, 전용주차구역 및 소방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충전시설, 전용주차구역 및 소방시설"로 한다.

제11조의5제1항 중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충전시설, 전용주차구역 및 소방시설"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1조의2제6항"을 "제11조의2제7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제11조의2제9항"을 "제11조의2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을 "제11조의2제8항 및 제9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시설의 소유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11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를 완료 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①・② (생	전용주차구역 등) ①・② (현행
략)	과 같음)
<u> <신 설></u>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
	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동화재탐
	지설비, 화재알림설비 및 소화
	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u>③</u> (생 략)	<u>④</u>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수	<u>⑤</u> 제4항
소충전소의 종류 및 규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⑤</u> ~ <u>⑨</u> (생 략)	<u>⑥</u> ~ <u>⑩</u> (현행 제5항부터 제9
	항까지와 같음)
<u></u> 세장·군수·구청장은 교통,	<u> </u>
환경 또는 에너지 관련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에게 <u>제7항 및</u>	<u>제8항 및</u>
제8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제9항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 ① (생략)
- ① 제1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개방 및 정 보공개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 제11조의4(시정명령 등) 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 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u>충전시설</u>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설치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11조의2 제1항 각 호의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거나 관리 · 보수 또는 개선하는 등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의5(이행강제금) ① 시장ㆍ 군수・구청장은 제11조의4제1 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 기 간 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 구역의 설치 비용 등을 고려하 여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을 부과한다. ② ~ ⑦ (생 략) 제13조(자금지원을 위한 재원) 제 6조부터 제8조까지, 제8조의2, 제10조, 제11조제2항 및 제11조 의2제6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 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 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 3. (생 략) 제16조(과태료) ① 제11조의2제9 항을 위반하여 충전 방해행위

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자에게는 2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1조의5(이행강제금) ① ---------충전시설, 전용주차구역 및 소방시설-----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3조(자금지원을 위한 재원) --조의2제7항-----_____ 1. ~ 3. (현행과 같음) 제16조(과태료) ① 제11조의2제10 ②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을 ② 제11조의2제8항 및 제9항--

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	
다.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